

MSIK Marine News



해상적하보험 등의 「전쟁위험」 취급과 관련하여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연평도에서의 북한군 포격과 관련하여, 현재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번 마린뉴스는 기업활동의 수출입에 반드시 필요한 해상적하보험과 그 외의 손해보험에 있어서 [전쟁위험] 취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책임의 시작과 끝)은,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등의 기간보험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A지점에서 B지점까지]라는 구간보험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종류에는 [해상위험], [스트라이크위험], [전쟁위험]의 3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쟁위험]만은 보험기간이 다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위험·스트라이크위험 - 창고에서 창고까지

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운송용구에 적재하기 위해 처음 이동한 순간부터, 통상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목적지의 수입자의 창고에서 하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운송구간이 보험보상의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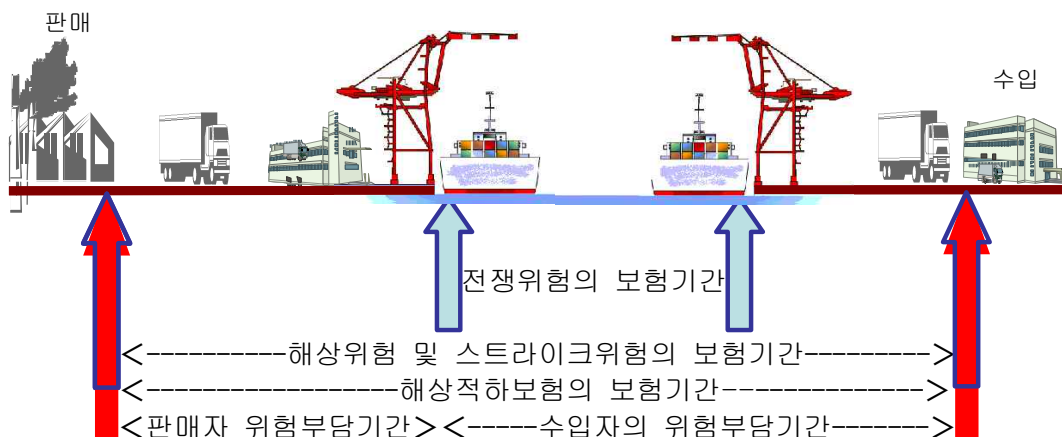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은 종료 됩니다.

- 외항본선에서 하역 후 60일(*)경과 한 경우
 - 통상의 운송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보관 또는 분배등을 위해 창고에서 하역 된 경우**
- (*)한국의 보험회사는 통상 30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위험 - 해상 운송중 만 가능

전쟁위험의 보험기간은 원칙으로 외항본선에 적재된 기간에만 한정 됩니다.

<(참고)CIF 수출(해외로)의 경우, 보험기간>



전쟁·스트라이크위험

전쟁위험(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포획, 나포, 유기된 기뢰, 어뢰)는 2009년 제정 협회전쟁약관을, 스트라이크위험(스트라이크, 직장폐쇄, 노동쟁의, 소요 또는 폭동)은 2009년 제정 협회 스트라이크약관을 해상 적하보험에 부대하는 것으로 담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보험료가 필요합니다.

2010년11월23일, 북한군의 포격에 의한 화물손해는 이 약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해상적하보험에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쟁위험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기업활동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 부보 내용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주요면책사항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해상적하보험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 이하 ICC) 에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ICC (A) 의 기본조건은 All Risk 입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요사항

- 항해, 운송지연에 기인한 손해
- 간접비용 (위자료, 위약금, 폐기비용, 잔존물처리비용 등)
- 화물이 육상에 있는 경우의 전쟁위험에 의한 손해**
- 원자력·방사능오염위험에 의한 손해
- 화학·생물·생물화학·전자기 등의 병기에 의한 손해
-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중 등의 테러위험에 의한 손해

상기 이외에도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협회적하약관·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국내에서 그 외의 손해보험종목 중 「전쟁위험」의 취급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한국손해보험업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손해보험종목에서 「전쟁위험」은 면책사항으로 되어,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면책

배상책임보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

상해보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면책

자동차보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는 보상),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